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82-0367/팩스 02-782-6659 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부서장: 송자은 실장 담당자: 이혜영 대리 e-mail: hyoung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-19호

시행일자: 2024.1.10.

수신자 화장품 영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 : 국무조정실, 신산업 분야 현장의 규제애로 조사 안내

-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워합니다.
- 2.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신산업규 제혁신위원회('16.3월 구성)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으며, 그간 위원회에서는 매년 상·하반기 12차례에 걸쳐 총 483건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
- 3. 이에 <u>신산업 분야</u>*에 대해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1월 19일(금)까지 이메일(E-mail: hyoung@kcia.or.kr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* 신산업 분야: ①모빌리티(드론·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차·자율주행로봇 등), ②ICT 융합(IoT, 데이터, 클라우드, AR·VR, 메타버스, AI, 지능로봇 등), ③바이오·헬스케어 (신약, 정밀재생, 의료기기, 식품·건강기능식품, 화이트바이오 등), ④에너지·신소재(신 재생에너지, 신소재 등), ⑤신서비스(핀테크, O2O 등)

붙임: 작성서식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

붙임 과제카드 작성서식(사례 포함)

건의제목	개선내용을 알수 있는 제목		
규제 소관부처	0000부 0000국 00000과		
건의자 (소속·직위·성명)	㈜000 대표 홍길동	연락처	010-0000-0000 abc@def.com

□ 건의내용

- (규제내용) 신산업 관련 경제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제내용 기술
 - ex) <u>000법은 000을 000하도록 규제/제한/한정 등</u>
 - * (관련법규) 000법 제0조제0항제0호
- (문제점) 규제에 따른 실질적 현장애로(문제점) 작성
 - 상기 규제로 인해 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간·절차·비용 등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추가설명 작성
 - ex) 000를 000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나, 000에 대한 규제로 000를 하지 못하는 실정
 - < 해외 또는 국내 사례(필요시 작성, 요점만) >
 - o (국가명 또는 기업) 내용작성
- 이 (개선건의) 개선을 희망하는 내용 명확히 작성
 - ex) <u>000을 000할 수 있도록 000를 허용/완화/확대/폐지</u> 등
 - 개선건의(상단내용) 추가설명, 건의(안) 제시

관련법규	- ㅇㅇㅇㅇㅇ법 제00조제0항제0호			
	- ㅇㅇㅇㅇㅇ법 시행령(규칙) 제00조제0항제0호			
건의성격	■ 신규 건의 □ 반복 건의			
반복건의 이력	■ 건의경로(또는 건의처) : 국조실 또는 타 부처 반복건의는 반드시 작성 ■ 제출일시 : ■ 건의 결과 :			

붙임1

관련 법령

□ 000법

제000조(조문 제목) ① (맑은고딕, 12point)

1.

가.

나.

2.

(2)

제000조(000) ①

1.

2.

(2)

(3)

□ ○○○법 시행령

제000조(000) ①

1.

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(예시)

제312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)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 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4.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, 비행지역,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
-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(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)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,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, 장소,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**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**한다.

붙임2

국내·외 현황 또는 사례

□ 국내 사례

□ 해외 사례